

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2. 9. 6 선고 2021가단1180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문덕현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8. 9.

판 결 선 고 2022. 9. 6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/11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C 사이에 2016. 8. 22. 체결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한다.
나. 피고는 C에게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16. 8. 24. 접수 제12325호로 마친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1)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주식회사 D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(이하 ‘예금보험공사’라 한다)는 C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1차전4116호로 대여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, 위 법원은 2011. 8. 18. ‘C은 D은행에게 2,1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. 11. 12.부터 2005. 1. 11.까지는 연 24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6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’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, 위 지급명령은 2011. 9. 7. 확정되었다.

나. 예금보험공사는 2018. 1. 31.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에 기한 C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, 그 무렵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(이하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을 ‘이 사건 양수금채권’이라 한다).

다. C은 부친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자 C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 한다) 중 2/11 지분에 관하여 2016. 8. 22.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를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(이하 ‘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’라 한다)를 하였고,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[인정근거] 자백간주, 갑 제1 내지 6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합천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이 사건 양수금채권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.

나.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/11 지분이 C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고를 비롯한 C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다.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

결국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/1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정지원

목
록

1. 경남 합천군 F 대 536㎡
2. 경남 합천군 G 전 2023㎡
3. 경남 합천군 H 답 1144.8㎡ 중 300/659 지분
4. 경남 합천군 I 답 379.3㎡, 끝.

1) 원고는 등기부에 기재된 상속재산 분할협의일인 '1999. 7. 5.'로 기재하였으나(소 제기시 실제 상속재산 분할협의일을 알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), 갑 제6호증(상속재산분할협의서)에는 분할협의일이 '2016. 8. 22.'로 되어 있고, 원고가 2022. 7. 4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위와 같이 실제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이 2016. 8. 22.임을 주장하였으므로, 원고의 청구를 2016. 8. 22.자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택하여 판단한다.